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05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권성동·엄태영·김기현

조정훈・강승규・김성원

박충권 • 유용원 • 서지영

유상범 • 김용태 • 김상욱

곽규택 · 김장겸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 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 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자동차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 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의 손해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자동차 등의 제조업자
	에 대한 특례)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도의 기
	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
	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
	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
	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
	해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하다.</u>